

---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

2014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질병관리본부

## < 요약 >

### 1. 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의사,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
- 신고대상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또는 검안한 경우, 결핵환자·의사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서식 :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양식 활용(붙임 서식 참조)
- 신고주기 : 지체 없이

### 2.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조사 협조

- 조사주체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조사범위 :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
- 조사내용 :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등
- 조사 후 조치
  -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 결핵 치료를 시작하고, 전염성 기간 동안 업무 종사의 제한
  -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 결핵진료지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 협조사항 : 밀접접촉자 명단 제공, 접촉자 조사 및 추구관리 협조

### 3.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

- 검사 대상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검사 주기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동법에 의한 검사로 갈음
- 유소견자, 비활동성 결핵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 검사 등 추구관리 철저
- 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된 경우 전염성 소실시까지 업무를 제한

### 4.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검사대상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검사 결과 양성 또는 양전된 경우 그 이후의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불필요)
-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진료지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

# 목 차

|                                 |    |
|---------------------------------|----|
| 1.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         | 2  |
| 2. 의료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 ..... | 3  |
| 3.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사 .....          | 5  |
| 4.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     | 7  |
|                                 |    |
| 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 9  |
|                                 |    |
| 붙임 1. 관련 법령 .....               | 13 |
|                                 |    |
| 붙임 2. 결핵바로알기 리플릿 .....          | 18 |
|                                 |    |
| 붙임 3. 기침예절안내 포스터 .....          | 22 |

## 1. 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 가.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 벌칙 조항: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핵예방법 제33조제1항]
-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결핵치료에 드는 비용 자원을 보류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8조의2제1항]

### 나. 신고 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

### 다. 신고시기

-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한 경우

### 라. 신고 대상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 관련 규정 :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399호, 2014.7.24.)
- 결핵환자 :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배양 양성
    - \* 특히 Mycob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됨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양성
- 결핵 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마. 신고 방법

- 신고처 : 관할 보건소장
- 신고방법 : 팩스 및 웹(질병보건통합시스템 <http://is.cdc.go.kr>)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서식 1. 참조)

## 2. 의료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

### 가. 목적

- 의료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결핵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 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함으로써 결핵 전파 및 발병을 조기에 차단

### 나. 근거법령

-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등의 책무) 및 제18조(역학조사)

### 다. 기본방향

- 의료기관에서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사 협조
  - 신속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
  -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추구관리 철저
  - 잠복결핵감염자 발견 및 잠복결핵감염치료실시(결핵 발병 고위험군 대상)와 추구관리 철저

### 라. 접촉자 조사 방법

- 신고된 환자가 전염성 결핵(객담 또는 기관지세척액 도말 및 배양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 접촉자 조사를 지체 없이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된 경우
  -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된 경우
- (조사주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중앙결핵역학조사팀
  - ※ 의료기관내 감염관리실에서 자체 조사 가능, 이 경우 조사 결과를 관할 보건소로 통지
- (조사범위) 조사대상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이며,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이

논의하여 결정,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결핵 환자가 의료기관 직원일 경우: 근무과정 밀접접촉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 결핵 환자가 입원환자일 경우: 입원치료 중 밀접접촉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 (조사내용) 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접촉자 조사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 잠복결핵감염 검사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조사 후 조치) 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치료 및 추구관리 협조, 업무의 제한 협조

- 결핵환자는 결핵치료, 잠복결핵감염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복약관리 등 추구관리 협조
-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로 진단된 경우 전염성 소실시까지 **업무중사 일시 제한**

○ (협조사항) 밀접접촉자 명단 제공, 접촉자 조사 및 추구관리 협조 등

### 3.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사

#### 가. 목적

- 결핵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국민 보호

#### 나. 근거법령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사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건강진단)

#### 다. 세부 시행사항

##### 1) 검사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2) 검사 내용

- 검사 방법 : 「결핵진료지침」 참조

- 흉부 X선 검사 실시

-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단,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

| 항목   | 방법       | 비고                       |
|------|----------|--------------------------|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 타 법에 의해 실시한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검사로 간주함

### 3) 검사결과에 따른 추구관리

- **(활동성 결핵)**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염성 폐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업무를 제한함

※ 폐외결핵 환자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은 불필요하나, 폐결핵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유소견자)** 흉부 X선 검사 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료의사의 진단에 따라 2014년 「결핵진료지침」을 준수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함
- **(비활동성결핵)** 진료의사의 진단에 따라 **활동성 결핵의 가능성 배제**를 위한 추가 검진(객담검사 등)을 시행하고, 치료력이 없는 비활동성 결핵의 경우 「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함

#### [참고. 결핵진료지침 2014년]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6-19배 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흉부 X선에서 비활동성 결핵의 소견은 1995년도 전국결핵실태조사 결과 수검자의 3.2%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한 문제여서 모두를 대상으로 LTBI 치료를 하기 쉽지 않으므로 객담검사, 추적 흉부 X선 검사 등으로 활동성 결핵을 배제한 후 LTBI 검사 양성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LTBI치료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흉부 X선 소견을 갖고 있으면서 결핵발병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LTBI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위험 정도에 따라 LTBI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4.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 가. 목적

- 결핵 발병 예방 및 결핵 전파 차단

### 나. 근거법령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거나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사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근거함
  -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시행('14.7.29)됨에 따라 결핵검사 외 잠복결핵감염 검사가 추가됨

### 다. 세부내용

#### 1) 검사 대상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법」 제78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2) 검사 내용

- 검사방법 : 「결핵진료지침」 참조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로 실시
-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주기적 검사에서 양전된 경우 그 이후의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불필요

### 3) 검사결과에 따른 추구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의 임상상황을 고려하여 「결핵진료지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 잠복결핵감염자의 업무 일시 제한 또는 업무전환 배치 불필요
- ※ 「결핵진료지침 VIII. 잠복결핵감염」 참조
- ※ 의료보험요양급여 : 병명코드 Z20.1(결핵에의 접촉 및 노출)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4.7.29>)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1쪽/4쪽)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 본 신고·보고서는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사체검안 시 이를 신고하고, 치료결과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 해당란에 √표시 또는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고 : [ ]결핵환자등 진단·치료

[ ]결핵환자등 사망·사체검안(사망일: 년 월 일)([ ]결핵 관련 사망, [ ]결핵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                                                                                       |                                |
|---------------------------------------------------------------------------------------|--------------------------------|
| (1) 성명 : [ ]                                                                          | (2) 주민등록번호 :                   |
| (3) 나이 : 만 세                                                                          | (4) 성별 : [ ]남, [ ]여            |
| (5)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 ]                                                              | (6) 최근 입국일(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년 월 일 |
| (7) 전화번호 :                                                                            | (8) 이동전화번호 :                   |
| (9) 주소 :                                                                              |                                |
| ※ (10),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에만 기입합니다.                                              |                                |
| (10) 직업 : [ ]교직원, [ ]보건의료인, [ ]학생, [ ]군인, [ ]아·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원양), [ ]항공기 객실승무원 |                                |
| (11) 시설명(직장, 학교 등) :                                                                  |                                |
| (12) 시설(직장, 학교 등) 주소 :                                                                |                                |

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

[결핵 초회 검사]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15), (16)의 날짜와 객담의 검체종류는 직접 기입)  
※ 초회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신고 당시 미실시나 검사중인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합니다.

| (13) 초회검사종류      | (14) 검사 상태 및 결과 |     |      |       |    | (15) 검체채취일<br>(또는 검사일자) |   |   | (16) 검체종류    |
|------------------|-----------------|-----|------|-------|----|-------------------------|---|---|--------------|
|                  | 미 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       |    |                         |   |   |              |
|                  |                 |     | 양성   | 음성    | 불명 |                         |   |   |              |
| 흉부X선검사           |                 |     | 결핵의심 | 정상    |    | 년                       | 월 | 일 |              |
| 도말검사             |                 |     |      |       |    | 년                       | 월 | 일 | [ ]객담,[ ]객담외 |
| 배양검사             |                 |     |      | NTM포함 |    | 년                       | 월 | 일 | [ ]객담,[ ]객담외 |
| 핵산증폭검사(TB-PCR검사) |                 |     |      |       |    | 년                       | 월 | 일 | [ ]객담,[ ]객담외 |
| 조직검사             |                 |     |      |       |    | 년                       | 월 | 일 | [ ]          |

[진단 및 초치료 약제]

|                                                                                                                                                    |                                                                                                                     |
|----------------------------------------------------------------------------------------------------------------------------------------------------|---------------------------------------------------------------------------------------------------------------------|
| (17) 질병코드 : □□□.□□□<br>※ 세분류(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반드시 입력                                                                                                   | (19) 환자구분 : [ ]신환자(초치료자)<br>[ ]재치료자 ([ ]재발자,<br>[ ]실패 후 재치료자,<br>[ ]중단 후 재치료자,<br>[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br>[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
| (18) 결핵종류<br>[ ]폐결핵(폐실질 또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침범한 결핵, 좁쌀결핵)<br>[ ]폐외결핵 (병변위치: )<br>[ ]폐결핵 + 폐외결핵(병변위치: )                                                |                                                                                                                     |
| (20)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 [ ]치료시작(또는 예정)일 : 년 월 일<br>[ ]치료안함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 전원한 경우 등                                                |                                                                                                                     |
| (21) 치료약제 : [ ]H, [ ]R, [ ]E, [ ]Z, [ ]Rfb, [ ]Km, [ ]Amk, [ ]Cm, [ ]S, [ ]Lfx, [ ]Mfx, [ ]Ofx, [ ]Pto, [ ]Cs,<br>[ ]PAS, [ ]Lzd, [ ]Clr, [ ]기타( ) |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시행 시마다 신고합니다.

|                                                                                                                                                           |
|-----------------------------------------------------------------------------------------------------------------------------------------------------------|
| (22)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결과 : [ ]미 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 ]내성 없음, [ ]내성 있음)                                                                                       |
| (23) 항결핵약제 검사 방법 : [ ]전통적인 방법, [ ]신속내성검사 ([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                                                                          |
| (24)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 [ ]H, [ ]R, [ ]E, [ ]Z, [ ]Rfb, [ ]Km, [ ]Amk, [ ]Cm, [ ]S, [ ]Lfx, [ ]Mfx, [ ]Ofx,<br>[ ]Pto, [ ]Cs, [ ]PAS, [ ]Lzd, [ ]Clr, [ ]기타( ) |
| (25)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 [ ]U88.0(다약제내성 결핵), [ ]U88.1(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리팜핀단독내성 결핵                                                                                |
| (26) 검체채취일 : 년 월 일 ※ 약제 내성 검사 의뢰용 검체를 환자로부터 채취한 날짜 (검사중인 경우에도 입력합니다.)                                                                                     |

■ 치료 결과 보고

|                                                                                                    |
|----------------------------------------------------------------------------------------------------|
| (27) 치료 결과 구분: [ ]완치, [ ]완료, [ ]실패, [ ]중단, [ ]사망,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진단변경([ ]NTM, [ ]종양, [ ]기타질병) |
| (28) 치료결과 판정일 : 년 월 일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인 경우 마지막 진료일                                                 |
| (29) 특기사항 :                                                                                        |

[신고·보고자]

|                                                     |
|-----------------------------------------------------|
| (30) 신고·보고일: 년 월 일                                  |
| (31) 요양기관 기호: [ ], 요양기관이름: [ ]                      |
| (32) 담당의사 성명: [ ], 의사면허번호: [ ], 진료과목: [ ] (서명 또는 인) |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핵환자등을 신고·보고합니다.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개요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신고·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가. 신고  
1)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나. 보고 : 신고 1)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치료한 결과
- 신고 대상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감염병의 진단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2012.9.27)]  
가. 결핵환자 :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1)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또는,  
2)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 또는,  
3)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  
\*특히 Mycob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인됨  
나. 결핵 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신고·보고 방법  
가. 신고·보고처 : 관할 보건소장  
나. 방법 : 팩스 및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내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이하 전산시스템)  
다. 서식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신고·보고 방법

필수정보 : (1) 성명, (3) 나이, (4) 성별, (30)~(32) 신고자 정보

- 신고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 서식(1쪽)의 노란색 음영은 신고를 위한 필수정보로 반드시 기입  
나. 검사·진단·치료 정보 : 확인 가능 항목을 기입하여 신고하며, 신고 당시 미실시나 검사 중인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보완신고
- 치료 결과 보고 : 해당요양기관에서 환자등이 치료를 종결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고

## 환자구분 및 정의 (서식(1쪽)의 (19)항목 해당)

| 구분          | 정의                                                                                                                                      |
|-------------|-----------------------------------------------------------------------------------------------------------------------------------------|
| 신환자(초치료자)   | 과거에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br>※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더라도 복용기간의 총합이 1개월 미만인 경우<br>※ 다른 병원에서 신환자(초치료자)로 치료하다가 완치/완료/실패/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전원한 경우 |
| 재치료자        |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고 복용 기간의 총합이 1개월 이상인 경우<br>※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류 함                                                            |
| 재발자         |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인 환자가 다시 결핵으로 발병한 경우                                                                                              |
| 실패 후 재치료자   |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실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실패 : 아래 치료 결과 구분 참조)                                                                                |
| 중단 후 재치료자   |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중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중단 : 아래 치료 결과 구분 참조)                                                                                |
|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 과거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
|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 과거 치료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                                                                                                                     |

##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 (서식(1쪽)의 (27)항목 해당)

| 구분           | 감수성결핵                                                                                     | 내성결핵<br>(다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
| 완치           | 치료 종결 후(또는 마지막 달)에 시행한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그 전에 한번 이상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던 경우               |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 실패의 증거 없이 치료를 완료한 환자로, 집중치료기 이후 최소 30일 간격으로 연속하여 시행한 배양 검사에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
| 완료           | 치료 실패의 증거 없이 치료를 완료하였지만 치료 종결 후(또는 마지막 달)의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없거나, 그 전에 한번 이상 객담 배양 음성 결과가 없을 때 |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균배양 음성 기준이 완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실패           | 치료 시작 후 5개월 째 또는 그 이후 시행한 객담 도말 또는 배양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치료를 종료하였거나 최소 2개 이상 항결핵 약제의 영구적 처방 변경이 필요한 경우<br>- 집중치료기 종료 시 음전 실패<br>- 유지치료기 동안 세균학적인 양전<br>- 귀놀론계 약제 혹은 주사제에 추가로 내성이 획득된 경우<br>- 약제 부작용 |
| 중단           |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                                                                                                                                                    |
| 사망           | 어떤 이유로든 치료 전 또는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                                                                                                                                                    |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완치/완료/실패/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                                                                                                                                                    |
| 진단변경         | 결핵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                                                                                                                                                    |

동 서식의 내용은 국가결핵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 \* (1) 성명 :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기입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명으로(공백 포함) 작성)
  - (2)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기입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성별과 나이는 자동 생성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기입
    - 미상의 경우 확인 가능 범위까지 입력 후 미상값은 \*로 입력
- \* (3) 나이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 (자동 생성 값 수정 가능, 필수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
- \* (4) 성별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성별란(주민등록번호 7째자리)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 (필수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
- (5) 국적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란에 체크하고, 국적은 표준국가명 조회탭을 이용하여 입력
- (6) 최근 입국일 : 외국인인 경우, 최근 입국일을 입력
- (9) 주소 : 환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를 입력 (주민등록 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 거주지 주소 입력)

### [결핵 초회 검사]

- (13) 초회검사종류 : 결핵환자등을 최초 진단하기 위한 검사종류에 대한 정보를 입력
  - 동일 검사를 2번 이상 실시한 경우 (예 : 배양검사를 액체배지와 고체배지에서 각각 시행) 전산시스템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14) 검사 상태 및 결과 : 검사 상태와 결과를 입력
  - 흉부X선검사의 경우, '결핵의심'은 '양성'란에, '정상'은 '음성'란에 표시
  - 배양검사결과 비결핵항산균(NTM)의 경우, '음성'란에 표시
- (16) 검체종류 : 객담과 객담외를 구분하여 표시

### [진단 및 치료 약제]

- (17) 질병코드 : 결핵질병코드(서식 4쪽)를 참조하여 작성. 호흡기결핵/기타결핵 및 도말양성 등의 구분을 위해 소숫점 둘째자리(최소 첫째자리까지) 입력
- (18) 결핵종류 : 병명 위치를 전산시스템에서 선택(조회탭을 이용)하여 입력
- (19) 환자구분 : 환자구분 정의(서식 2쪽)를 참조하여 입력
- (21) 치료약제 : 결핵환자등의 진단 후 해당의료기관에서 최초 처방한 성분명을 기입
  - 항결핵약제 종류 및 약어 : 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kanamycin(Km), amikacin(Amk), capreomycin(Cm), streptomycin(S), 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p-aminosalicylic acid(PAS), 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를 시행한 때마다 필수정보(\*)와 함께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항목 보완 신고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실시내역 입력)
- (25)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 (24)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선택 시, 다음의 기준으로 자동 선택됨
  - R =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H & R = U88.0 (다약제내성결핵)
  - H & R & (Lfx or Mfx or Ofx) & (Km or Amk or Cm) = U88.1 (광범위약제내성결핵)

### [치료 결과 구분]

- (27) 치료 결과 구분 정의(신고서 2쪽)를 참조하여 입력  
'사망'의 경우 원사인을 기준으로 결핵 관련과 결핵 이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

### [특기사항]

- (29) 특기사항 : 환자 실거주지, 과거치료약제, 수정·보완 내역, 특기사항 등 신고·보고서 정보 이외 중요 정보 기입

동 서식의 내용은 국가결핵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핵 질병 코드

(4쪽/4쪽)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내용                                                     |
|-----|--------|--------|--------------------------------------------------------|
| A15 |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
|     | A15.0  |        |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
|     |        | A15.00 |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                  |
|     | A15.1  |        |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     |        | A15.01 |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
|     | A15.2  |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
|     |        | A15.20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                                  |
|     | A15.3  |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     |        | A15.21 |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
|     | A15.4  |        |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                              |
|     |        | A15.30 |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     | A15.5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
|     |        | A15.31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
|     | A15.6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흉막의 결핵                       |
|     |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일차 호흡기 결핵                            |
|     | A15.7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                            |
|     |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상세불명의 호흡기결핵                          |
| A16 |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
|     |        | A15.90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
|     |        | A15.91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
|     | A16.0  |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결핵                                  |
|     |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
|     | A16.1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공동이 있는 폐결핵                       |
|     |        | A16.10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     | A16.2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결핵                         |
|     |        | A16.11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있는 폐결핵                  |
|     | A16.3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     |        | A16.20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
|     | A16.4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
|     |        | A16.21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결핵성 흉막염 흉막의 결핵              |
|     | A16.5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일차 호흡기 결핵                   |
|     |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호흡기 결핵                   |
|     | A16.6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
|     |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공동이 있는 호흡기 결핵        |
| A17 |        | A16.90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
|     |        | A16.91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
|     | A17.0  |        | 신경계통의결핵                                                |
|     |        |        | 수막결핵                                                   |
|     | A17.1  |        | 수막결핵중                                                  |
|     |        |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
|     | A17.8  |        | 뇌 및 척수의 결핵중                                            |
|     |        |        | 결핵성 수막뇌염                                               |
|     | A17.80 |        | 결핵성신경염                                                 |
|     |        |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
|     | A17.81 |        |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결핵                                         |
|     |        |        | 기타 기관의 결핵                                              |
|     | A17.82 |        | 뼈 및 관절의 결핵                                             |
|     |        |        | 척추의 결핵                                                 |
|     | A17.88 |        |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
|     |        |        | 기타 뼈의 결핵                                               |
| A18 |        |        | 기타 근골격계의 뼈 및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윤활막염, 결핵성 힘줄윤활막염              |
|     | A18.0  |        |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
|     |        |        | 신장 및 요관의 결핵                                            |
|     | A18.1  |        | 방광의 결핵                                                 |
|     |        |        | 기타 비뇨기관의 결핵                                            |
|     | A18.10 |        | 전립선의 결핵                                                |
|     |        |        | 기타 남자 생식기관의 결핵                                         |
|     | A18.11 |        | 자궁경부의 결핵                                               |
|     |        |        | 결핵성 여자골반의 염증성 질환, 결핵성 자궁내막염, 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염             |
|     | A18.12 |        | 기타 여자 생식기관의 결핵                                         |
|     |        |        |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관의 결핵                                       |
|     | A18.13 |        |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증                                           |
|     |        |        | 장, 복막및장간막림프절의결핵                                        |
|     | A18.14 |        | 결핵성 복막염                                                |
|     |        |        | 결핵성 장염                                                 |
|     | A18.15 |        | 후복막 결핵                                                 |
|     |        |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
| A19 |        |        | 눈의 결핵                                                  |
|     | A18.16 |        | 귀의 결핵 ·결핵성 중이염                                         |
|     |        |        | 부신의 결핵 ·결핵성 애디슨 병                                      |
|     | A18.17 |        | 기타 명시된 기관의 결핵                                          |
|     |        |        | 갑상선의 결핵                                                |
|     | A18.18 |        | 기타 내분비선의 결핵                                            |
|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
|     | A18.80 |        | 심장의 결핵, 심근의 결핵, 심내막의 결핵, 심낭막의 결핵                       |
|     |        |        | 비장의 결핵                                                 |
|     | A18.81 |        | 기타 부위의 결핵                                              |
|     |        |        | 좁쌀 결핵                                                  |
|     | A18.82 |        |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좁쌀 결핵                                   |
|     |        |        | 여러 부위의 급성 좁쌀 결핵                                        |
|     | A18.83 |        | 상세불명의 급성 좁쌀 결핵                                         |
|     |        |        | 기타 좁쌀 결핵                                               |
|     | A18.84 |        | 상세불명의 좁쌀 결핵                                            |
|     |        |        | 다약제내성 결핵                                               |
| U88 |        |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 **1. 결핵환자 신고·보고 관련 근거법령**

###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신설 2014.1.28.>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4.1.28.]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홍역
2. 결핵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2. 접촉자 조사 관련 법령

### ○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결핵검진등 관련 법령

####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接客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2. 객담(咯痰)의 결핵균 검사
3.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의 종류별 특성과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1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과 「의료급여법」 및 「암관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3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결핵 바로 알기』 안내홍보(안)

#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앞)

### 검사 대상자 및 방법

- ▶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 관련 법령 : 결핵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진단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검사(객담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14.7.29 시행)
    - 과거 결핵 치료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다음의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진료지침에 따라 예방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2년내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 과거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흉부 X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경우

※ 흉부 X선 검사소견에서 과거에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발병의 상대위험도가 6-19배로 높음(결핵진료지침, 2014)
- ▶ 전염성 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소실 될 때까지 업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예방 수칙

-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사를 꼭 받으세요.
- ▶ 의료현장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 결핵예방을 위한 5가지 생활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결핵(Tuberculosis)이란

-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결핵 감염 경로

-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셔도 괜찮습니다.

## 결핵 증상과 치료

- ▶ 주요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 ▶ 치료 :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됩니다.

## 결핵 진단 방법

- ▶ 흉부 X선 검사 :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를 실시합니다. 결핵 진단에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단독으로 결핵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 ▶ 가래(객담)검사 : 객담검사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 결핵예방접종(BCG접종) 바로 알기

-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핵예방접종(BCG접종) 바로 알기

### ▶ 직장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를 하였는데, 결핵검사를 위한 흉부 X선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당해 연도에 직장건강검진에 의한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다면 동일 연도에는 결핵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직장건강검진)의 흉부 X선 검사 결과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검사는 일반건강검진(직장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 검사결과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비활동성 결핵의 소견은 활동성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진료의사의 진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력이 없다면 결핵진료지침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합니다.

### ▶ 활동성 호흡기결핵으로 판정된 경우 언제 업무복귀가 가능한가요? 혹은 검사결과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에 업무를 제한해야 하나요?

활동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전염성이 소실 시까지 업무중사를 제한합니다. 비활동성 결핵의 경우 전염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업무중사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 결핵 바로 알고 잘 대처하기!

### 결핵(Tuberculosis)이란

-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결핵 감염 경로

-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셔도 괜찮습니다.

### 결핵 증상과 치료

- ▶ 주요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 ▶ 치료 :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됩니다.

### 결핵 진단 방법

- ▶ 흉부 X선 검사 :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를 실시합니다. 결핵 진단에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단독으로 결핵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 ▶ 가래(객담)검사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 결핵예방접종(BCG접종) 바로 알기

-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5가지 결핵예방 생활수칙



## 결핵,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 ▷ 면역기전이 취약한 신생아, 영아는 결핵발생 시 중증결핵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결핵균에 감염된 경우,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필요합니다.  
(Isoniazid, 9개월 치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http://tbzero.com>  
[결핵바로알기] <http://tbfree.cdc.go.kr>

#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침예절 캠페인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첫걸음 **기침 예절**을 지킵시다.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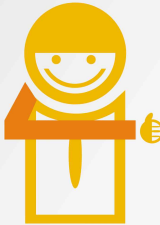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둘**




---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으로 가리기**

만약,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셋**




---

**기침,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